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1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 권칠승·박용갑·박 정

서미화 · 전진숙 · 송옥주

민병덕 · 윤종군 · 한민수

정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'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'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,123개,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,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.

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,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 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).

법률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0(인식개선 등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
 - 2.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
 - 3.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16조의21(벤처기업 주간)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6조의20(인식개선 등) 중소벤
	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
	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
	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
	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
	업을 추진할 수 있다.
	1.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
	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
	<u>는 자에 대한 포상</u>
	2.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
	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
	<u>홍보</u>
	3.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
	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1(벤처기업 주간) ① 벤
	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
	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
	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
	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
	<u>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
	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

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
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<u>한다.</u>